

체류 자격이 ‘삶의 자격’이 되는 이주배경 청소년

이양지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운영집행위원, 노무사

지난 5월 개소한 안산시흥 이주노동자 상담소에 한 달에 한 번 노동 상담을 나간다. 상담 사례 중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했다가 오히려 취업 자격이나 체류 자격을 문제로, 사업주로부터 협박당하는 경우가 있다. 진정 후, 사업주가 지원해 주기로 했던 기숙사비나 공과금비를 대여금이라며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기도 한다. 유모차를 끌고 온 한 여성 노동자는 기타(G-1) 체류 자격으로 취업에 제한이 있었는데 퇴직금을 청구했다가 취업 자격을 빌미로 사업주에게 협박당하고 있었다. 이분은 난민 지위가 불인정되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패소하면 한국에서 태어난 딸과 함께 미등록 체류 신분이 된다. 가족과 함께 살고 싶지만, 비전문취업(E-9) 비자로는 동반 체류(F-3 등)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을 알아보려고 오는 노동자들도 많았다. 요건이 까다로워 변경이 쉽지 않다.

고용허가제(E-9)는 국내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면서 젊고 건강한 시절(18~39세)에 필요한 노동력만 제공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최초 3년, 재고용을 포함 최대 4년 10개월) 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전제해서 만든 제도이다. E-9 노동자들은 최초 계약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지만, 폭언·폭행, 부당한 대우, 열악한 기숙사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회사를 옮길 수 없다.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단으로 이탈하면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 된다. 체류 자격이나 재취업의 불안으로 부당함을 참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용허가제를 비판하며,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력’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해왔지만, 이주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고민을 직접 접하면서, 실은 나도 이들의 ‘노동권’

만을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다. 이들에게는 노동 외에도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고, 아이를 키우는 '삶'의 여러 문제가 있었다. 곧 미등록 체류 신분이 될지도 모를 아이를 만난 무렵,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마련한 이주배경 청소년에 관한 강의를 듣게 되었다.

노동권 넘어 이주민의 '삶의 권리'

이주배경 청소년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쪽이 이주 경험을 가진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통칭하는 말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가정 자녀, 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을 폭넓게 포괄한다. 이주배경 학생은 2014년 6만7,806명에서 2025년 20만2,208명으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가정' 학생은 같은 기간 4,706명에서 5만2,876명으로 증가했다. 과거에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전문직 종사자 등 외국인이 늘어난 것이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차별과 배제 경험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상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교과서에 쓰이는 학습 어휘를 이해하지 못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격차가 심해진다. 학업 부진과 부적응이 겹치면 대안학교로 전환하거나 아예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일반 학생에 비해 높다.

진짜 위기는 성인이 되는 순간 찾아온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들은 한국 땅에서 나고 자랐어도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한다. 미성년 시기에는 부모의 체류 자격(방문동거 F-1, 동반 F-3 등)에 의존해 머물 수 있었지만, 성년이 되는 순간, 이 방패는 사라진다.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한국에 와서 초중고교를 다니며 성장한 아이들에게 한국은 잠시 머무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언어를 배우며 성장해 온 곳이다. 부모의 모국보다 자신의 삶이 쌓여 있는 한국이 '모국'에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 그런데 성인이 되는 순간, 자신이 살아온 공간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 체류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대학에 진학할지,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취업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부모와 계속 함께 살지 등 삶의 모든 중요한 선택 앞에 체류 자격 문제가 놓인다.

삶의 모든 선택 앞에 체류 자격 문제가

취업을 염두에 두고 특성화고 등 직업교육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졸업 후 자신이



▲ 한국에서 자랐지만 '외국인'인 이들에게 취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출처 : pixabay

배운 전공과 실제 취업하려는 직종, 그리고 해당 체류 자격의 요건이 맞지 않는다면 또 다른 장벽을 만나게 된다. 한국에서 자랐지만 '외국인'인 이들에게 취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곳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다음 직장'뿐 아니라 '다음 체류 자격'까지 찾아야 한다.

대학에 진학해서 학생 비자로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외국인'이기에 유학생에게 책정된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도 막혀 있다. 한국 학생은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할 수도 있지만, 이들에게 휴학은 체류 자격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완화하기 위해 법무부는 2025년부터 E-7-Y(국내성장인력)와 F-2-R(지역특화) 비자를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이것 역시 특정 직장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체류 자격'에 불과하며, 계약 해지나 지역 이탈 시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정주를 위해서는 향후 한국인 평균 소득(GNI)의 1배~2배 수준의 안정적인 소득 증빙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 엄격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 영주권(F-5)을 새로 취득해야 한다.

프랑스도 '숙인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일정 기간 프랑스에 거주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두고 있다. 단순히 부모의 국적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자란 실질적 삶의 터전을 인정하여 성인이 된 이후 비자 불안정이나 노동 시장 배제 등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완충 장치다.

부모가 영주권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미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한 자녀조차 체류 자격을 얻기 어려운 현실은 결국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시선' 탓에 만들어진다. 이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다. 단지 살아갈 권리이다. 알터